

제출대상 사업장

업종 대상 다음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의 대상 300kW 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변경**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조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설비 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9]

③ 건조설비

▶ **설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설치**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여부 확인 (해당 물질을 밀폐·제거할 경우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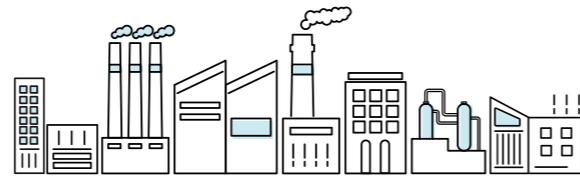
▶ **설치**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변경**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출자 및 제출시기

제출주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수수료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종류 | 규모 | 수수료(원) |
|--------------------------------|-----------------------|------------------|
| 13개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 84,000 |
| |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 123,000 |
| |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 183,000 |
| 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 | 67,000 |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3기 미만 | 44,000 |
| |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 58,000 67,000 |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 | 36,000 |

⚠ 꼭 알아주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발체(제정 2021.1.26., 법률 제17907호)

▶ **적용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부터 적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 제외

▶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관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5조 관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이행해야 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도안내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게 뭔가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주체는 누구인가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업종대상** 과 **설비대상** 이 있습니다. **업종대상** 은 13개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하고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으로, 아래 점검표를 이용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확인 사항 | 판단 기준 | 해당여부 (o,x) |
|--|----------------------|---|--|
| ① 공장등록증상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코드) | |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하십니까? | |
| ② 공장 설립 또는 이전일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설립일 이전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사업장의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해당 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 ③ 전기계약용량 | | kw | 전기요금고지서의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입니까? |
| ④ 설비 증설 또는 이설 | 증설/이설일 전기 정격용량의 합 | 년 월 일 kw | 아래 표의 해당 업종 적용시점 이후에 증설, 이설한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입니까? |
| 대상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 | | 적용 시점 | |
| 25***, 23*** | | 2009. 2. 1 이후 | |
| 10***, 16***, 22***, 24*** 29***, 30***, 32***, 33*** | | 2012. 7. 1 이후 | |
| 20***, 261**, 262** | | 2014. 9. 13 이후 | |

자체점검표의 ①-②-③이 해당하거나 ①-③-④가 해당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대상** 사업장입니다.

설비대상 은 적용 시점 이후 다음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자체 점검표를 이용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적용 시점 | 판단 기준 | 해당여부 (o,x) |
|---------------|------------|--|------------|
| ① 용해로 | |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입니까? | |
| ② 건조설비 | | 연료소비량 50kg/h, 정격 소비전력 50kw/h 이상입니까? | |
| ③ 화학설비 | 2009.2.1 |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고 취급 물질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의 기준량이상 해당하십니까? | |
|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입니까? | |
| ⑤ 국소배기장치 | 2009.2.1 | 배풍량이 60m ³ /min 이상이고, 안전검사대상 49종 유해물질때문에 사용하십니까? | |
| ⑥ 전채환기장치 밀폐설비 | 2011.11.18 | 배풍량이 150m ³ /min 이상이고,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외에 허가관리대상물질, 분진작업 때문에 사용하십니까? | |

① ~ ⑥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대상** 입니다.

③화학설비와 ⑥국소배기장치, 전채환기장치, 밀폐설비를 확인하기 위한 **유해물질 등 확인 자료**는 아래의 QR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등 확인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공장을 신축하는 **업종대상** 사업장인 경우 **착공 15일 전 까지**

설비대상 사업장 또는 공장을 증축·이전하는 **업종대상** 사업장은 **설비 설치 15일 전**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업체에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설팅기관 및 업종/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예시는 **아래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작성예시 (자료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 일선기관명 | 소재지 | 관할 구역 | 전화번호 |
|----------|-------|---|--------------|
| 서울광역본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로구,중구,동대문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용산구,서초구,강남구 | 02-6711-2899 |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 02-6924-8742 |
|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중랑구,노원구,강북구, 도봉구,성북구 | 02-2086-8020 |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 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 033-815-1022 |
| 강원동부지사 | 강릉시 |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 양양군,고성군,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 033-820-2541 |
| 부산광역본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051-520-0605 |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052-226-0523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 055-269-0543 |
| 경남동부지사 | 양산시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055-371-7542 |
| 광주광역본부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 구례군,담양군, 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 062-949-8762 |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완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 063-240-8542 |
| 전북서부지사 | 군산시 |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 063-460-3621 |
| 전남지역본부 | 목포시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 해남군,장흥군, 신안군 및 신안군 | 061-288-8731 |
| 전남동부지사 | 여수시 |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 061-689-4954 |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 064-797-7521 |
| 인천광역본부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032-510-0545 |
| 경기북부지사 |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 031-828-1941 |
| 경기중부지사 |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 032-680-6512 |
| 고양피주지사 |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 031-540-3813 |
| 경기서부지사 |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 031-259-7128 |
| 경기동부지사 |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 031-785-3324 |
| 대구광역본부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 053-609-0553 |
| 대구서부지사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한다), 고령군 및 성주군 | 053-650-6832 |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 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 054-478-8024 |
| 경북동부지사 | 포항시 |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 054-271-2041 |
| 대전세종광역본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 042-620-5651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증평군,괴산군,영동군,옥천군,보은군 | 043-230-7121 |
| 충북북부지사 |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 043-849-1011 |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 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 041-570-3437 |